



청 해 진 소 식

The wando county News

2021
제544 발행일 7월 28일

7

발행처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TEL) 550-5182 FAX) 550-5169 홈페이지 www.wand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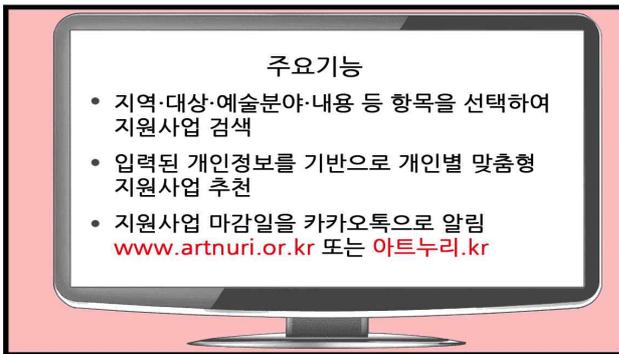


이달의 소식

<p>■ 도정 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 안내 ○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 2021년 9월까지 연장 적용 ○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 전라남도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2개→3개로 조정됩니다! ○ 우리동네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 ‘약속 챌린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 우리집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청년세대에게 답답하고 불리한 법’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법령정비’로 바뀌요
<p>■ 국정 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졸업생 대입수상실적 변경 신청기간 안내 ○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 병역생활 고충상담, 성폭력·군범죄 신고/상담 「국방헬프콜☎1303」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행동요령 홍보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7월 국정홍보만화,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 ‘아트누리’ ○ 7월 국정홍보만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 하반기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동물등록 자진신고 ○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 ○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안내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오픈 ○ 여름철 산사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 ○ 안전하게 갯벌을 즐기는 방법! 안전수칙 지키기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p>■ 이달의 역사인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의 독립운동가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 ○ 8월의 6·25전쟁영웅 송효석 대한민국 육군 소위 ○ 8월의 현충인물 ‘김순애 애국지사’ ○ 8월의 호국인물 박희동 공군준장

2021년 7월 국정홍보만화
-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 '아트누리' -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
'아트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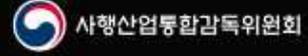
2021년 7월 국정홍보만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20%로 인하됩니다.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온라인 올가미! 당신을 노립니다

온라인 도박(금전거래 등)은 불법

순간의 호기심이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불법도박신고센터
(포상금 최대 5천만원)

1855-0112

도박문제 전문 상담
(365일 24시간 운영)

1336

하반기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17)

농림축산식품부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현행)
인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p>버섯류</p> <p>예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p>	<p>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p> <p>예시 "세척 후 드세요."</p>	<p>신선편이 농산물</p> <p>예시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p>
---	---	---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행일: 2021년 하반기 완공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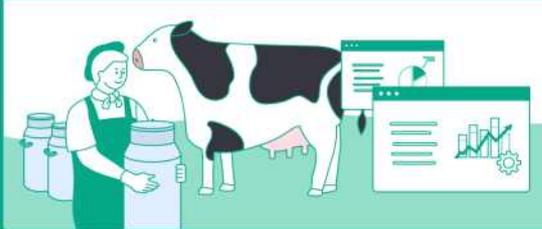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 현장교육 실시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2년 상반기: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21년 10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시행일 : 2021년 6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중금속, 염분 과다 등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대상을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합니다.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온라인 직거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영세농업인을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3개소) 운영합니다.

* 스튜디오 및 해당 콘텐츠 신청 : 온라인 예약페이지(<http://at-studio.kr>)
* 수도권 외 전년, 경북(2개소) 확대 운영

동물등록 자진신고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84)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9.30.

집중단속 10.01.~10.3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란?

-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농어촌 공공서비스가 더 나아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령(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개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 기초생활 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체감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으로 개편되는 주요 내용

공공,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

3개 항목 신설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등 8개 항목

접근 편의성 목표치 적용
차량 이용 도달시간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 후에는?

교육·문화	시간접근성 목표	대상
도서관	10분	국립도서관 이용
초·중학교	10분	초·중학교 육상, 불하수단 제공
체육시설	30분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
문화	40분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 후에는?

의료·복지	시간접근성(목표)	대상
영유아 보육·교육	20분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응급의료	30분	응급실과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 응급처치 서비스
진료	30분~1시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

정주여건

생활 폐기물 **마을 내** 정돈된 곳에서 영농 생활 폐기물 수집 처리

더 나은 적극행정으로 농어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막걸리 빛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6)

막걸리 빛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대한민국
전통음식 막걸리



농림축산식품부

지금(막) 거르는(걸리) 우리 술!

막걸리

맛과 향이 일품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술

역사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술
- 삼국시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막걸리**
-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의 **백주**
- 조선시대: 「춘향전」, 「광재물보」의 **목걸리, 막걸니**



농림축산식품부

방법

- 쌀을 씻어 고들고들하게 된밥을 지어 식힌 후,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 누룩과 물을 넣고 2~3일 간 발효시켜 체에 걸러내는 과정으로 만들

특징

- 김치, 된장과 같이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발효음식의 하나로, 조선 시대까지 막걸리는 집집마다 가양주로 빚어 집안 특유의 술맛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
막걸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빚는 작업 자체는 물론 생업과 의례, 경조사 활동 등에서 나누는 전통 생활습관까지

막걸리의 모든 것이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막걸리는 우리 것이여~



농림축산식품부

막걸리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입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술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자료제공: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 044-201-749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아 우리 돼지 함께 지켜요.
- 우리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 도로 등을 지나다가 열린 울타리 출입문이 보이면 꼭 닫아주세요.
- 울타리 출입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멧돼지의 이동을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등산 등 산림지역 방문 후 옷·신발을 깨끗이 세척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장마철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울타리 밑부분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훼손된 울타리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차단 울타리 긴급대응 안내전화 >

- 경기권 : 031-790-2841(한강유역환경청)
- 강원권 : 033-760-6062(원주지방환경청)
- 장마철 24시간 신고전용 : 041-950-5975(국립생태원)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주민과 출입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차단 울타리 출입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주세요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소독해주세요



훼손(찢어지거나 구멍난 곳 등)된
울타리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ASF 차단 울타리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여 아프리카열병(ASF)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중요 시설

‘약속 챌린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9)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약속챌린지

약속 챌린지란?

우리 주변의 모든 다양한 가족들을 편견 없이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

1. 약속을 뜻하는 수어동작 사진찍기

*2인 참여 시 함께 약속하는 손동작으로도 참여 가능

2. 약속 메시지 남기기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3. 필수 해시태그 남기기 #세상모든가족함께 #약속챌린지

4. 함께 약속할 친구 지목

*약속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친구(지인) 2인 이상 태그 인스타그램 업로드



1인 참여시



2인 참여시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부에게 “약속 반지”를 드립니다

* 약속 반지는 다양한 색상의 실이 연결되어 하나의 반지가 되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에서 네이버까지 알림 수단이 확대 됩니다.



1차 미확인 시



2차 미확인 시



3차 - 우편발송

수신 대상 -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수신 시점 -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수신 채널 - 카카오톡(1차), 네이버 앱(2차)

수신 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유의사항

1.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발송됩니다.
2. 카카오톡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네이버앱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가입이 필요합니다.
3. 모바일고지서 열람 시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21년 1월 ~)
5.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별도 신청(정보통신망 고지)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카카오톡 고지서 미확인 시, 네이버 앱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모두 미확인할 경우 종이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9)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간주

| 신고 대상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자연사제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8)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률적 분쟁 해결제도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GO!

Q1. 어떤경우에 이용하면 좋을까요?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임차인이 3개월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요.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Q2.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로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신청가능

신속한 해결

조정절차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

Q3.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전문가 참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절차에 참여



Q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렴한 비용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10만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

Q5. 어떻게 신청할까요?

1. 온라인 신청



- 1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 
www.reb.or.kr
- 2 페이지 내, 오른쪽 하단
임대차분쟁위원회 배너 클릭
- 3 주택 | 상가건물에 맞춰 아래버튼 클릭
- 4 연결된 페이지에서 조정신청 클릭!

2. 유선상담

임대차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전화로 받을 수 있어요.

서울 02-3394-9871~3

세종 044-868-8341

경기 031-902-3573~4

전북 063-276-8022~3

강원 033-244-9793~4

경북 054-275-9771~2

누구나! 언제나!

간편

신속

드문

저렴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우리집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80)

k-apt

입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이란?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Save
관리비 절약



주요 공개정보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회계감사 보고서	전자입찰 시스템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	공사내용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유지보수, 도색 등 사업자 선정 시 무료시스템 제공
↓	↓	↓	↓	↓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제공	관리비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 업무 적정성 진단	입찰 전과정 및 결과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집행유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접속 또는 휴대폰에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 고용보험은 평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원치않은 실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21.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율 및 수급요건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기 타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분야별정책 ▶ 고용안전망 ▶ 전국민고용보험

**‘청년세대에게 답답하고 불리한 법’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법령정비’로 바꿔요**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법령정비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색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사고발생 관련 (수리비·연료료* 휴차료** 과다요구 등)

2018: 124, 2019: 114, 2020: 116
총계: 354 (40.6%)

계약 관련 (계약금 미환급 등)

2018: 83, 2019: 101, 2020: 150
총계: 334 (38.6%)

* 연료료: 차량사고에 따른 소비자배상책임을 한정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 ** 휴차료: 렌터카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 손실 배상 비용

구분	2018	2019	2020	계
렌터카 관리 미흡	14	18	22	54(6.2)
차량 회수 관련	7	15	15	37(4.3)
연료대금 정산 관련	8	8	6	22(2.5)
기타*	17	20	33	70(8.0)
합계	253	276	342	871(100.0)

* 기타: 과태료(주차유한 등),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미반도 등

렌터카 이용자의 9.5%가 사고 경험, 20~30대의 사고 발생률을 높였어요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

소비자의 9.5% (50명) 차량 사고 발생 경험있어요

연령별 단기 렌터카 사고발생 경험

(단위: %)

20대: 15.6%, 30대: 15.5%, 40대: 9.4%, 50대: 4.3%, 60대: 2.5%, 전체: 9.5%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는?

렌터카 이용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원했어요

수리 견적서*

60.1% (319명)

정비 명세서**

38.4% (201명)

* 수리견적서: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수리할 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
** 정비명세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수리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기재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렌터카 수리에 따른 휴차료의 과다 청구 많아요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 **56.0%(28명)**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은?

(단위: %)

기준대여요금*: 60.7% (17명), 정상요금**: 35.7% (10명), 실제대여요금: 3.6% (1명)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했어요

* 기준대여요금: 차량 모델별로 정해 둔 시세에 따른 대여료 (예: 소나타 000원, 그랜저 000원 등)
** 정상요금: 할인 등의 적용되지 않은 대여료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consumer.go.kr, 舊 행복드림)'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개인정보위 조사1과 ☎ 02-2100-3117)

-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CCTV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사례	위반 조항	처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 고지사항(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을 누락한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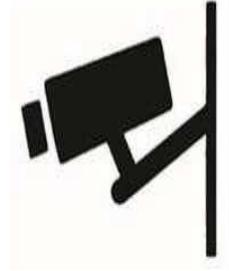
- 이와 관련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 반드시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안내(붙임 참고)

- CCTV 설치·운영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안내



- **설치 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 장소** : 출입구 천장, 엘리베이터, 00
- **촬영 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00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과 김00 (0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아래 수탁관리자 표시)

- **수탁관리자** : 000업체 박00 (02-000-0000)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오픈

(자료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 044-204-3166)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P 세금포인트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액(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부여

M 세금포인트 조회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

P TAX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여러분의 세금포인트 사용이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여름철 산사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산사태!

대비하면 **안심**

방심하면 **재난**

작은 관심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려면...



집주변의 산사태위험 점검
배수로를 확인하고 잔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기상 및 산사태 정보 확인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한다.



대피장소 확인
대피소와 비상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구조요청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산사태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119로 연락해주세요.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는 우리의 나무가 수목진료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이용해주세요.
- 우리 지역의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우리의 나무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쾌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소중한 나무!

나무는 해충이나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 사용,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되기도 하는데요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나무병원이 필요한 이유?



“나무를 건강하게 해요”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 처방으로 나무의 건강을 지켜 우리 집과 함께 사는 자연을 보호해줘요



“나와 가족을 지켜줘요”

나무의사 처방 없이 하는 방제는 토양, 나무 식재 상황 등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져요.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은 내 가족에게 위험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위협해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에요”

나와 가족의 삶을 맡긴 집을 품고 있는 자연 숲. 나무의 위험은 가족의 위험이 돼요. 나무의사 전문 진료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 건강해진 나무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요.



나무의사 나무병원 상식

우리는 아프면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건강 검진을 받아요. 우리 삶과 함께 숨 쉬는 자연도 건강해지려면 나무의 정확한 진료도 필요해요. 나무병원의 전문 진료와 치료에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국 나무의 건강은 나와 내 가족, 삶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전문 수목진료 기관은?



여기서 잠깐
나무의사 나무병원법 추가 상식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대상으로 약제살포 등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나무의사 처방제란?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



나무의사는 직접 수목피해 현장 방문



진료사항 진료부예 기록



농약사용시 처방전 의무 발급



여기서 잠깐
나무의사 나무병원법 추가 상식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궁금해요 Q&A

Q1 수목 진료는 무엇인가요?



A 나무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 처방, 치료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농약물 제외)

Q2 아파트 단지 나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아파트 단지의 나무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만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Q3 조경회사나 실내소독업체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A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없거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할 경우 나무 치료를 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4 우리지역 나무병원 어디에 있나요?



A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관리시스템 (<http://ec.fores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 043-219-2956)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낮춥니다.

□ 매일 기온을 확인합니다.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하기
-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KDCA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 043-719-7783)



접종대상		사전예약시기	접종 일시	백신 종류	접종 기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0세~74세 어르신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6월 23일 0시~ 6월 30일 18시	7월 5일~ 7월 17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6월 예약 조기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6월 28일 0시~ 6월 30일 18시	7월 5일~ 7월 17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7월 19일 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교육·보육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돌봄인력)	7월 중	7월 중		위탁의료기관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재수생 등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7월 말	8월 중		
50대 장년층 (50세~59세)	55세~59세	7월 12일 주	7월 26일 주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50세~54세	7월 19일 주	8월 초		
40대 이하* (18세~49세)		8월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 40대 이하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접종 사각지대 해소 계획]

-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접종 통해 종사자 접종편의 도모

안전하게 갯벌을 즐기는 방법! 안전수칙 지키기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2)

○ 현 황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야외 활동이 각광을 받으면서 탁 트인 바다에서 즐기는 갯벌 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음
- 갯벌 활동자 증가와 함께 고립 등 안전사고도 빈발해 인명피해로 이어짐

구 분	2021.5월 현재	2020년	2019년	2018년
사고 발생건수	34	57	56	43
사망·실종자 수	5	6	1	8

○ 안전수칙 홍보

1	간조, 만조 시간 확인 후 간조 1시간 전 알람 설정하기 → 간조 1시간 전 갯벌 체험을 종료하고 나와야 밀물 속도에 앞서 육지에 도착 가능
2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어 호루라기와 함께 가져가기 → 위험을 감지하면 주변에 알리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기 * 올해 3월, 남성 2명이 평택 제부도 인근 갯벌에 들어가면서 차량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 신고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
3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연안사고 사망자 비율
4	나홀로 갯벌 출입하지 않기, 항상 2인 이상 다니기 → 혼자 갯벌에 있다가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 실종되는 사건 빈번하게 발생
5	뿔에 빠졌을 땐 몸을 뒤로 젖혀 자전거 페달 밟듯 움직여 빼내기 → 서서 발을 빼려고 하면 더 깊이 박히게 되며, 누운 자세로 발을 빼내는 것이 쉬움
6	짙은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 특히, 짙은 안개가 끼면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지 않아 길을 잃기 쉬움

갯벌 안전수칙



간조, 만조 시간 확인 후
간조 **1시간 전** 알람 설정하기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어
호루라기와 함께 가져가기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나홀로 갯벌 출입하지 않기,
항상 **2인 이상** 다니기



뱀에 빠졌을 땐 **몸을 뒤로 젖혀**
자전거 페달 밟듯 움직여 빼내기



짙은 안개 등 기상 악화시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